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제정	1996. 3. 1	규칙 제 59호
개정	1997. 4. 29	규칙 제 99호
개정	1998. 3. 18	규칙 제127호
개정	1999. 12. 16	규칙 제187호
개정	2000. 4. 15	규칙 제196호
개정	2000. 7. 12	규칙 제202호
개정	2000. 12. 30	규칙 제211호
개정	2005. 1. 11	규칙 제297호
전부개정	2009. 1. 16	규칙 제385호
일부개정	2011. 4. 7	규칙 제442호
일부개정	2012. 11. 26	규칙 제469호
일부개정	2014. 5. 13	규칙 제505호
일부개정	2015. 8. 10	규칙 제560호
일부개정	2015. 9. 25	규칙 제565호
일부개정	2018. 12. 31	규칙 제643호
일부개정	2021. 2. 26	규칙 제697호
일부개정	2021. 5. 1	규칙 제701호
일부개정	2021. 11. 5	규칙 제718호
일부개정	2023. 9. 8	규칙 제75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5. 13]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6, 2014. 5. 13, 2021. 11. 5>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건축물사용승인서
 - 나. 건축물대장
 - 다. 재산세과세대장(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라. 개발행위허가서

마. 건축허가(신고)서

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3. 급수지 위치도

4.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락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5. 도로점용(굴착)허가증 사본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 2021·11·5>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 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2·11·26>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2·11·26, 2014·5·13>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모든 급수공사(신설 또는 개조공사)의 공사비는 1미터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공사거리로 한다.

제6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부과·고지하여 이천시금고 대행기관에 납부한다.

제7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

1.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특수가압시설 기부 채납원

3. 특수가압장 설치 부지사용 승락서

제8조(흡수정의 설치 신청) 흡수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흡수정 설치도면

제9조(급수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 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

제10조(급수장치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①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시에는 개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 2014·5·13>

② 제1항에 따른 개전 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2·11·26>

제11조(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급수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 2014·5·13>

제12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 부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 2015·9·25>

② 제1항의 교체부착 수수료는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2·11·26>

제13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 계량을 검침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이 보관하고 있는 수도사용료 조정카드(별지 제9호서식)와 급수자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 2014·5·13>

제14조(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등)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구경별 정액요금은 조례 제43조에 따라 정수처분 된 급수전을 제외하고는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모든 급수장치에 적용한다. <개정 2012·11·26>

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정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제15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2·11·26, 2014·5·13>

② 급수사용자 등은 수도사용료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급수사용자 등이 사용료를 납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2·11·26, 2014·5·13>

제15조의2(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38조2항에 따른 할인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고지(이메일, 휴대폰 등)에 참여한 경우 : 급수계량기당 매회 200원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 납부하는 경우 : 해당 납기월액 요금의 100분의 1(단, 그 상한액은 1만원)

[전문개정 2012·11·26]

제15조의3(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누수지점의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로 평소보다 수도사용량의 증가가 명백한 경우. 다만,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변기, 물탱크, 보일러, 수도꼭지 등 지상 누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2로 하며, 감면기간은 누수가 발생한 2개월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요금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③ 조례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적용 시점, 감면기간 등은 재난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5·1>

1. 재난지역에 긴급 복구용으로 사용하는 급수: 전액면제
2.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일 때에는 조례 제27조의 업종 중 일반용과 대

중탕용 수도요금을 100분의 50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④ 조례 제37조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대해서는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금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신설 2015·9·25, 개정 2018·12·31, 2021·5·1, 2023·9·8>

⑤ 조례 제37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최종단계 요금을 2단계까지만 적용한다. <신설 2015·9·25, 개정 2018·12·31, 2021·5·1, 2023·9·8>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감면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감면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감면사유가 소멸되었으나 감면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1·2·26, 2021·5·1>

[본조신설 2014·5·13]

제16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기내에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 경과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12·11·26, 2014·5·13>

제17조(운반급수) ① 시장은 급수구역내의 시설 및 급수장치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용자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특수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6>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장치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임시용 요금으로 하며 선납하게 하고 급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설 급수정의 업종에 따라 요금 및 징수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6>

제18조(사용량의 인정) ① 조례 제28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검침정례일 기간 동안 공사·출타 등의 사유로 참석인이 없거나 동파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 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례 제29조제1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익월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수정조정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1·26, 2014·

5·13〉

② 부정급수장치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해서는 가족 수(또는 종업원 수), 시설규모, 그 밖의 제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12·11·26〉

③ 옥내 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를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12·11·26〉

제19조(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용량 조정)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용량 조정은 조례 제7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서만 실시하며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12·11·26〉

제20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 2014·5·13〉

② 급수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인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 2014·5·1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2항에 따른 수리신청이 있을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2·11·26〉

제21조(기존급수장치의 임시사용) ① 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건축물을 재건축 또는 재건축하기 위하여 철거하였을 때에는 기존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1·26〉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만 1회 6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26〉

③ 임시급수 종료기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2조(개량비 지원 등) ① 조례 제42조의2에 따른 개량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

1. 개량비용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목과 같이 차등 지원한다.

가. 60㎡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90%

나. 85㎡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80%

다. 130㎡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30%

2. 제1호에 따른 최대 지원 금액은 공용배관은 60만원, 급수관은 18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급수관을 각각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 시설

3.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량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한 시설

2.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허가를 득한 주택

④ 개량비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2.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 시설

3.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4. 소형 면적 주택

5. 신청자가 많아 전부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후도가 심한 주택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순서를 적용하여 결정

[본조신설 2015·8·10]

부칙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4·29 규칙 제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3·18 규칙 제12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1999·12·16>

부칙 <1999·12·16 규칙 제1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4·15 규칙 제19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0·7·12 규칙 제2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규칙 제2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 규칙 제2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6 규칙 제3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7 규칙 제442호>

이 규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26 규칙 제4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13 규칙 제5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0 규칙 제5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규칙 제5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규칙 제643호〉

이 규칙은 공포된 달의 다음 달 사용분 수도요금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26 규칙 제6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1 규칙 제7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5 규칙 제7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8 규칙 제7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5·13>

(추 6)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5·13〉

급수공사시행통지서(제2조제3항 관련)

수 도
수 신

20 년 월 일
성명

귀하께서 신청하신 급수공사는 20 년 월 일 제 호로 승인되었
으니 납부금 및 공사비를 월 일까지 금융기관(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게 됩니다. 단, 공
도에 매설되는 시설물의 일체는 시의 소유로 귀속하며, 공사시공은 이천시 상수
도 지정공무소에서 시공하게 됩니다.

공 사 비		시 납 부 금	
재 료 비		재 료 검 사 수 수 료	
인 건 비		준 공 검 사 수 수 료	
잡 비		감 독 료	
공 동 부 담 액		분 담 금	
		수 도 미 터 대	
		수도미터보호통대	
		설 계 수 수 료	
		도로포장 복구비	
소 계		소 계	
합	계		

※ 귀택의 수도공사시에는 수용가 확인서를 첨부하오니 특별히 감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5·13〉

급 수 공 사 준 공 검 사 서 (제4조 관련)																	
공 사 명	급 수 공 사	급수공사(신설 : 개소)															
시 공 자		대 표 성 명															
계 약 금 액																	
계 약 년 월 일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년 월 일														
검 사 년 월 일	년 월 일	비 고															
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직: 성 명 : 입회원 직: 성 명 : 이 천 시 장 귀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2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6.6%;">담당자</td> <td style="width: 16.6%;">팀장</td> <td style="width: 16.6%;">과장</td> <td style="width: 16.6%;">소장</td> <td style="width: 16.6%;">부시장</td> <td style="width: 16.6%;">시장</td> </tr> <tr> <td style="height: 30px;"></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담당자	팀장	과장	소장	부시장	시장						
담당자	팀장	과장	소장	부시장	시장												

[별지 제4호서식] (제6조 관련) <개정 2014.5.13>

(이천시 공기업 특별회계)

급수공사비납입통지서

		제 호
		200 년도
과 세 대 상 물 건	상수도급수공사비	
세 목	세 액	
재 료 비		
수 수 료		
계 량 기		
시설분담금		
시 설 비		
계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이천시 금융기관에 납부(납입)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644-4221~2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이천시 공기업 특별회계)

영 수 필 통 지 서

		제 호
		200 년도
과 세 대 상 물 건	상수도급수공사비	
세 목	세 액	
재 료 비		
수 수 료		
계 량 기		
시설분담금		
시 설 비		
계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보합 니다.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장 귀하		

(시금고 통보용)

(이천시 공기업 특별회계)

영 수 필 통 지 서

		제 호
		200 년도
과 세 대 상 물 건	상수도급수공사비	
세 목	세 액	
재 료 비		
수 수 료		
계 량 기		
시설분담금		
시 설 비		
계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 니다.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공기업출납원 귀하		

(행정기관 통보용)

(이천시 공기업 특별회계)

영 수 증

		제 호
		200 년도
과 세 대 상 물 건	상수도급수공사비	
세 목	세 액	
재 료 비		
수 수 료		
계 량 기		
시설분담금		
시 설 비		
계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장 공 기 업 금 출 납 원		

※ 수입금 출납원 직원과 금융기관장
소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5·13>

설치 위치						
급수 종별			공사 구분	임시·신설·증설·시변경		
월 소요량			모 타 및 펌 프 규 격			
건축 허가유무	허가번호		허가년월일		건축주 성명	

위와 같이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다만, 본인 소유의 특수가압시설공사가 확정되면 시설 일체를 귀 시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이 천 시 장 귀하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5·13〉

흡수정설치신청서 (제8조제1호 관련)						
설치 위치						
급수 종별		공사 구분	임시·신설·증설·시변경			
월 소요량		모 타 밋 폼 프 규 격				
건축 허가 유무	허가번호		허가년월일		건축주 성명	

위와 같이 흡수정 시설을 설치하고자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다만, 본인 소유의 특수가압시설공사가 확정되면 시설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5·13>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5·13〉

급수사용명의변경신청서(제11조 관련)

읍·면·동별 및 급수번호 : 제 종

급수전 소재지 :

구 사용자 :

신 사용자 :

상기와 같이 명의 변경 신고합니다.

일 일 년

주 소

신고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

담당자	팀 장	과 장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13조 관련) <개정 2014. 5. 13>

점검일 매월 일부터 일까지

년도 수도 사용료 조정카드

사용자주소 :								급수전번호		제 호			
성 명 :								급수종별		용			
사용 월분	검침년월일		수도미터	조 정 내 역				검침일		확인자		비고	
	월	일	지점수	사용량	금액		합계 금액	성명	년월일	성명	년월일		
12			m ³	m ³	원	원	원						
11			m ³	m ³	원	원	원						
10			m ³	m ³	원	원	원						
9			m ³	m ³	원	원	원						
8			m ³	m ³	원	원	원						
7			m ³	m ³	원	원	원						
6			m ³	m ³	원	원	원						
5			m ³	m ³	원	원	원						
4			m ³	m ³	원	원	원						
3			m ³	m ³	원	원	원						
2			m ³	m ³	원	원	원						
1			m ³	m ³	원	원	원						
12			m ³	m ³	원	원	원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5·13>

급 수 자 대 장(제13조 관련)

급수번호 제 호 (앞 면)

소재지								소유자								사용자							
양수기종별				미리		양수기번호				제 호		급수개시일				년 월 일				개선 ... 개선 ... 개선 ... 개선 ...			
양 수 기 점 검 표																							
년도								년도								년도							
점검 월일		양수기 지침수		본 원 사용량		조정액		점검 월일		양수기 지침수		본 원 사용량		조정액		점검 월일		양수기 지침수		본 원 사용량		조정액	
1/																							
2/																							
3/																							
4/																							
5/																							
6/																							
7/																							
8/																							
9/																							
급수종별		/		제 종				/						급수가구		/						/	
업태별		/						/						양수기이동		/						/	
세대수		/						/						비 고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뒷 면)

1. 급수실태																					
업 태 별						급수가구						급수인원									
2. 변동사항																					
신 규 개전월일			수선 공사			시설 변경			종별 변경			급수 중지			강제 단수			개 전			
월	일	적요	월	일	적요	월	일	적요	월	일	적요	월	일	적요	월	일	적요	월	일	적요	
3. 특기사항									4. 수용가 위치												
봉인탈락			누 수			양수기고장															

(추 3)

[별지 제11호서식] (제15조제1항 관련) <개정 2014.5.13>

상·하수도 요금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년	월	수용가 번호	납기 내	납기 후
			까지	까지
기 간	~	원	원	원

주 소

성 명 : 전자납부번호

금월지침	사용량	상수업종	구 경
전월지침	가구수	하수업종	검침일

구 분	사용료	정산액	가압료	합계
상수도료				
구경별정액료				
하수도료				
계				
납기금액		납후금액		
		미납금액		
		까지		
		회		원

위 금액을 정히 영수 함.
년 월 일

※ 미납금은 별도의 독촉장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하수도	
장호원	

이 천 시 장 수납인
(수용가 보관용)

상·하수도 요금 수납의뢰서

년도	월
수용가 번호	

성 명 :

구 분	납 기 내	납 기 후
상수도		
하수도		
합계		

위 금액을 수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수납인
(수납은행 보관용)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

납기	년도	월	수용가번호	납기내	까지	납기후	까지
				원	원	원	원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주 소:
성 명:

구경	업종	금월지침	사용량	가구수	정산액
구 분	상수도요금	구경별정액료	가압료	하수도요금	
납기내금액					
납기후가산금					
납기후금액					
납 기 내					
납 기 후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마감일 가까운 시중은행(농, 수, 축협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발행기관용) 이 천 시 장 수납인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14·5·13〉

수 도 요 금 감 면 신 청 서 (제15조의3제2항 관련)				
수 용 가	수용가번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신 고 내 용	누수발견 일 시		누수위치	
	누수원인			
	누수복구 완 료 일		누수복구 공사업체	
위와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에 따라 수도 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누수복구공사(전,중,후) 사진 2. 공사대금 지급 영수증(세금계산서), 시공업자의 공사완료 확인서 등				

[별지 제13호서식] (제16조 관련) <개정 2014. 5. 13>

(추 3)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5·13〉

수 도 계 량 기 시 험 신 청 서(제20조제1항 관련)

급수종별급수번호	제	호	제	호
급 수 소 재 지				
수도미터기 규 격		양수기번호		지 침 수
시 험 료				
사 용 량 변 동 사 항				
전월 사용량	사 용 료	금월 사용량	사 용 료	비 고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평균 사용량 보다 증감되어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험신청 하오니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취급자	팀 장	소 장

보 관 인

수도미터

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 담당 (인)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5.13>

수 도 계 량 기 수 리 신 청 서

(제20조제2항 관련)

급수종별급수번호	제 호		제 호		
급 수 소 재 지					
수도미터기 규 격		양수기번호		지 침 수	
고 장 내 역			수 선 비	원정	

상기와 같이 수도미터기를 수선 받고자 하오니 수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일자 년 월 일
신청일자 년 월 일

주 소
신 청 인 (인)

담당자	팀 장	과 장

보 관 증

수도미터

상기물품을 수리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 담당 (인)

(추 3)